충남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

Ⅰ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

(1)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

	입학전형	계열	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	문항 번호	번호	계열 및 교과									
평가대상						인문사회				괴	학		_	교과 외	
			자격기준 과목명			국어	사회		수학		화학		지구		
논술 등 필답고사	해달 없음														
면접· 구술고사	수시 일반전형														
	수시 지역인재 전형	사범계열													
	학생부 종합전형	전체	해당 없음 ※ 우리 대학은 논술, 필답고사 및 선다형 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지 않으며, 면접고사의 경우 제출서류(학교 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)의 내용을 확인하는												
	국가안보 융합전형	전세													
	정시 일반전형	사범계열	면접과 사범계열 교직 인·적성 면접을 진행함 ※ 수시 체육특기자전형 및 정시 실기/실적 일반전형 실기고/						· · · ·						
	재외국민 특별전형	전체	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힘												
실기 및	수시 체육특기자 전형	체육계열	세열												
실험 	정시 실기/실적 일반전형	예체능계열													

Ⅱ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(1) 선행학습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

	판단기준						
구분	항목	세부내용	이행 점검				
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	1.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	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(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)	0				
	2. 선행학습	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					
	영향평가 보고서	③ 문항 제출 양식(문항카드) 작성의 충실성	해당없음				
	항목 준수	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					
	3.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구성	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	0				
		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	0				

(2)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

- 우리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대한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(지침은 VI.부록에서 제시)

<충남대학교 학칙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조항>

제50조의2(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) ①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 등)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(신설 2015.3.31.)

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5.3.31.)

(3)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
<충남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>

구분	소속	직위	성명	비고
위원장	입학본부	본부장	최○○	
위원	입학본부	부본부장	0 00	
위원	사범대학	교수	김〇〇	
위원	유성고	교사	장○○	외부
위원	보람고	교사	김○○	외부
위원	입학본부	입학사정관	0 00	소위원회
위원	입학본부	입학사정관	0 00	소위원회

- (4)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
 -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 위촉 및 구성(2023. 3. 2.~ 3. 10.)
 -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(2023. 3. 13.)
 - 대학별 고사 현황 및 면접고사 문항 분석(2023. 3. 13.~ 3. 20.)
 - · 면접고사 문항 분석 방법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시 '면접 시 질문사항'기록지 활용
 -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(2023. 3. 21.~ 3. 28.)
 - 선행학습 영향평가 심의 및 확정(2023. 3. 29.)
 -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(2023. 3. 31.)

<충남대학교 대학별 고사 현황>

대학별 고사 유형	운영 여부	영향평가 대상 여부	비고
논술고사	×	×	
 적성고사	×	×	
실험고사	×	×	
면접 · 구술고사	0	×	교과지식과 관련 없음
교직 인·적성면접	0	×	
실기고사	0	×	예·체능계열

<충남대학교 면접고사 형태 및 문항 예시>

면접형태	·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 및 제출서류(학생부, 학생부 대체 서식)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
면접문항(예시)	 ○○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입니까? ○○학과에 지원하기 위하여 고교교육과정 중 본인이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인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?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○○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그이유와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? ·지원전공과 관련하여 읽은 도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. ·○○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인이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? ·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○○과목 수업시간에 활동한 ○○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?

Ⅲ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

□ 해당 없음

IV.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ㅁ 해당 없음

V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및 사범대학 교직 인성면접을 실시하였으나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검증 및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선행학습과 관련이 없음

2024학년도 면접고사 및 인성면접에서도 선행 교과지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지 않도록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배제할 것이며,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수험생들에게 전형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전형방법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

충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지침

제정 2015. 3. 31. 제정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학칙」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"선행학습"이라 함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, 시·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

- 제4조(설치)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 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장은 입학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입학부본부장이 되며, 기타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·위촉한다.
 - 1. 본교 교원 중 해당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
 - 2. 고등학교 교육과정, 학습이론 및 대입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 - 3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현직 고등학교 교원
 - 4. 학부모. 시민단체 소속 회원
 -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.
- 제6조(임기)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·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·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대학입학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 및 평가하였는지 여부
 - 2. 대학입학전형으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되었는지 여부
 - 3.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

- 제8조(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제9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소위원회) ①제7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위원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학내 교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제11조(비밀유지)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다.
- 제12조(수당 등) 외부 위원에 한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선행학습 영향평가

- 제13조(평가시기)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매년 실시하되, 대학입학전형 종료 후부터 실시하여 평가결과 공개 전일까지 종료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평가절차) ①소위원회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를 심의·확정한 후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영향평가 결과 반영) 총장은 위원회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등 입학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영향평가 결과 공개) 총장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학년도 대학입학전 형에의 반영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